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규정번호	4-1-6
		제정일자	2012.01.01.
		개정일자	2024.10.01.
		개정차수	4차
		소관부서	산학협력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에 둔다.

제4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산학협력단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
7.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업무
8. 학교기업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9. 운동지도, 교육, 자격증발급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시설 설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요양보호사교육원 설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콘텐츠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미디어창작에 관한 업무

제5조 삭제 <2024.10.01.>

제2장 조 직

제6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7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④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하부조직 및 행정부서) 산학협력단은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기관 또는 조직을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수탁받은 시설 중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점(안산대학교 안산화정영어마을) 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하는 각종 산업기술개발 관련 연구소
2.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하는 각종 국고지원사업단
3. 유아교육 및 보육, 사회복지, 평생교육 등 위·수탁사업 관련 기관
4.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기관 또는 조직

[본조신설 2024.10.01.]

제9조(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① 삭제<2024.10.01.>

②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행정직원 및 조교를 임용하여 하부조직 또는 행정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 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겸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10.01.>

⑤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직원 또는 조교로 하여금 본 대학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겸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1조 삭제 <2024.10.01.>

제12조(수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타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사용료 수입
6. 이자수입 등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본조신설 2024.10.01.]

제13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 운영비
2. 산학협력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 운영 지원비
4. 산학협력단의 자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본조신설 2024.10.01.]

제14조(회계)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제4장 보 칙

제16조(비밀유지의무) 본 정관에서 규정한 제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산학협력사업에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산업체의 경영 또는 기술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본인의 신분상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관의 변경) 총장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단장의 건의에 의하여 본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 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 ③ 해산시의 잔여 재산은 당해 대학의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 ④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공고)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3. 각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 ② 공고방법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의 효력발생시기는 2004년 3월 1일로 한다.
2. 본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의 효력 발생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